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4. 13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
-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 일수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(연가수해범위 확대)

□ 주요골자

-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월1회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함
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토록 함(안 제20조1항)

$$\text{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-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'01년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22조 제5호)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“(토요전일근무제)”를 “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”로 하고 동조제1항중 “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

$$\bigcirc \text{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}(\text{월})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총무과 ☎ 940-4102
입 안 자	총무과장	홍 덕 기
	총무담당	서 천 하
	담 당 자	윤 덕 규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6조2(토요전일근무제) ①주민편익 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	제16조2(토요일휴무제및전일근무제)--- ----- -----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 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
②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	②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

현행	개정(안)
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<u>결근 일수·휴직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u> <u>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/u>	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<u>결근 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</u>
(신설)	② <u>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, 0.5일미만은 절사한다</u> ○ <u>휴직자의 연가일수 =</u> $\frac{12\text{월}-\text{당해년도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
②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(안)
③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공가) (생략)	제22조(공가) (현행과 같음)
5. <u>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</u> <u>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u>	5. <u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</u> <u>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</u>